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 기준 신설(안 제9조)

- 1) 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추가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직종별 재직 인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수에 더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그 외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 규모,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 이상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2) 추가 인력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 산정 방법을 규정함.
- 재직자의 경우 보건의료인력등의 연간 고용일수를 합산하여 365일로 나누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사용자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365일로 나누어 연도별 평균 인원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 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직전 3개년도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연도별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나. 조문정비

- 제9조 신설에 따라 종전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기준)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 각 직종별로 재직 중인 사람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에 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 사용자”라 한다)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제1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제5항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난임치료시술휴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

2. 제1호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규모,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 이상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각 직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균 인원을 산정한다.
가.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 : 보건의료인력등의 연간 고용일수를 합

산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

나. 육아휴직등 사용자의 경우 :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또는 휴직의 연간 사용일수를 합산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평균 인원을 직전 3개년도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기준)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u> <u>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 각 직종별로 재직 중인 사람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에 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 사용자”라 한다)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u> <u>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u>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
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20조제10항·제11
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4항·제
5항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
른 배우자 출산휴가, 「국
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별표 1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를」 제18조의3제1항에 따
른 난임치료휴가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 및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에 따른 난임치료시
술휴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
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

2. 제1호를 제외한 보건의료기
관의 경우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규모,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 이상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각 직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 평균 인원을 산정한다.

가.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 :

보건의료인력등의 연간 고용일수를 합산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

나. 육아휴직등 사용자의 경

우 :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또는 휴직의 연간 사용

<u>제9조</u> ~ <u>제11조</u> (생략)	<u>일수를 합산한 후 365일로</u> <u>나누어 산정한 인원</u> 2. <u>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u> <u>평균 인원을 직전 3개년도에</u> <u>대하여 평균한 값을 최근 3년</u> <u>간 연도별 평균 인원으로 한다.</u> <u>제10조 ~ 제12조</u> (현행 제9조부 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37